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학술연구(학위논문연구 포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부정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016.3.14.개정)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016.3.14.개정)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016.3.14.개정)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016.3.14.개정)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루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학술연구(학위논문연구 포함)와 관련있는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10.18.개정)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016.10.18.개정)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를 위해서는 ‘본조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016.10.18.개정)

⑥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16.10.18.개정)

1.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을 30% 이상 포함

2.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

⑦ 대학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5항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016.10.18.신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사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4-1-10 연구윤리 규정

5. 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6.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8.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전화·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는 본교 교학처에서 담당한다.

제9조(예비조사의 실시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조사가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서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 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1조(본 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제5조 제5항에 따른 조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3. 본조사위원회 명단 및 서명날인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비밀의 유지 등) ①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파벌,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 등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그 직을

4-1-10 연구윤리 규정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5조(판정)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무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요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2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